

1.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요건 합리화(소령 제4조제4항 신설)

·신설된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요건을 합리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금융소득 관련 개정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규정 중 주요 개정사항(자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편 참고)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은 2015년으로 적용기간 종료됨. 따라서 2016년부터는 조건부과세대상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1명당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개정됨

[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구 분	내 용
취 지	저금리 시대 통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과 세 례	(1) 원칙 : 법에 정한 거주자*1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200만원까지 : 비과세 ②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 세율로 분리과세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법에 정한 거주자*2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250만원까지 : 비과세 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9% 세율로 분리과세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말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 판단기준금액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

- ①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②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③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에서 정하는 농어민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2)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소득령 제26의2 제1항)

종 전	개 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결산·분배 ·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 펀드의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가능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 (좌 동) · 펀드유보가능 이익에 <u>집합투자자산의 매 매이익</u> 추가

<개정이유> 펀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6년 4월 1일 이후 결산·분배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소득 관련 개정사항

(1)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령 제9조제1항제2호)

종 전	개 정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민박·음식 물 판매·어로·양어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 연간 <u>2천만 원</u> 이하의 소득	연간 <u>3천만원</u> 이하의 소득

<개정이유> 농어민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관련 규정 신설

업무용승용차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규정을 신설함

1)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매각이익에 대한 과세 규정 신설(소법 제25조, 소령 제55조제1항 신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각 당시 장부가액(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적용시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2016년 1월 1일, 그 밖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특례규정 신설(소법 제33조의2, 소령 제78조의3 신설) /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법인세법편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가 있다.

구 분		법인세	소득세
적 용 대 상		모든 법인	복식부기의무자
업 무 사 용 금 액 의 계 산 방 법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text{업 무 업 무 용 업 무 사 용} = \text{승 용 차} \times \text{사 용 금 액 관 련 비 용 비 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업 무 업 무 용 업 무 사 용} = \text{승 용 차} \times \text{사 용 금 액 관 련 비 용 비 율}$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소 득 처 분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별도로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적 용 시 기	감 가 상 각 의무화 규정* ¹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² : 2016. 1. 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②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
	위 외의 규정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매각하거나 손금에 산입,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³ : 2016.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위 외의 복식부기의무자 : 2017. 1. 1. 이후 매각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¹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는 규정을 말한다.

*2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령 제143조제3항)

종 전	개 정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는 규정의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정이유> 추계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

5. 근로소득 관련 개정사항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 신설 (소법 제156조의7 신설)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법에 정한 사용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7%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 고소득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6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2) 국외의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라도 원천징수하는 대상 추가(소법 제127조제1항제4호나목)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위 “5.(1)”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6. 개인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 허용(소령 제40조의4)

종 전	개 정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인출로 보아 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이연 허용 ①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②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가입자가 55세 이상일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개정이유> 연금계좌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

7.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조정(소법 제84조제1호,제2호)

종 전	개 정
·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u>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u>	·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u>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① <u>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u> ② <u>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u>
· 슬롯머신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u>500만원 미만인 경우</u>	· 슬롯머신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u>200만원 이하인 경우</u>

<개정이유> 경마환급금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강화

<적용시기> 2016년 7월 1일 이후 환급금 또는 당첨금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8. 소득공제 관련 개정사항

(1)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소법 제50조제1항)

종 전	개 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적용 배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u>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u> 은 기본공제 적용

<개정이유> 소득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용카드소득등소득공제액 계산상 추가공제율사용분에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제126의2)

종 전	개 정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 추가공제율사용액 × <u>10%</u>	<u>추가공제율사용액* × 20%</u>

* 추가사용액의 계산방법

구 분	금 액
2015년도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2016년도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개정이유>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심리 개선

<적용시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세액공제 관련 개정사항

(1) 기부금세액공제금액 확대(소법 제59조의4제4항)

종 전	개 정
3,000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00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 25%	2,000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2,000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 <u>30%</u>

<개정이유> 개인의 기부문화 조성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정비(조특법 제122의3)

종 전	개 정
·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월세액세액공제 적용기한 :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성실사업자 적용요건 중 다음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u>연평균수입금액</u>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연장 <u>적용기간 종료</u>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u>연평균수입금액의 90%</u>를 초과할 것

<개정이유> 성실신고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제도 보완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요건에 관한 규정은 시행 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사항

(1) 비과세 1세대1주택 관련 규정(소령 제154조제2항제3호, 제155조제7항)

종 전	개 정
·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하는 경우 중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u>최저생계비 수준</u>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u>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u>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1세대2주택이 있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 중 -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좌동) 단, 다음의 단서 추가 단, 농어촌주택 중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귀농주택에 대한 신고지요건은 개정시 삭제함

<개정이유>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귀농주택관련 규정은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대주주의 범위 확대(소령 제157조제4항,제5항)

주주 1인 및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특수관계인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개정시 밑줄 부분을 추가함)

구 분	2016. 3. 31. 이전 양도분	2016. 4. 1. 이후 양도분
① 유권증권시장 상장주식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 50억원 이상인 주주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 25억원 이상인 주주
②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 40억원 이상인 주주	지분율 2% 이상이거나 시가 20억원 이상인 주주
③ 벤처기업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 40억원 이상인 주주	
④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 10억원 이상인 주주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16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된 개정사항

1) 일괄 양도된 토지·건물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소법 제100조제2항, 소령 제166조제6항)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등의 일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상 일괄공급시 적용하는 안분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안분하는 경우 ①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신 설>	① (좌 동) ② <u>납세자가 신고한 안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u>
(신 설)	· <u>주택·건물 및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을 일괄 양도시 가액 안분기준 신설</u>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상증세법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가액

<개정이유> 자산별 가액의 임의적 구분에 의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시 필요경비 인정(소령 제163조제3항)

종 전	개 정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 명확화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법정 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인정

<개정이유> 자본적 지출액 필요경비 인정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사항(소법 제95조제2항,제4항)

종 전	개 정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u>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u> · <u>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상 보유기간 계산시 2016. 1. 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2016. 1. 1.부터 기산한다.</u>

<개정이유>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5) 양도소득세율 관련 개정사항(소법 제104조)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주식 : <u>10%</u>	· 중소기업 주식 : <u>대주주가 양도한 경우는 20%, 대주주 아닌자가 양도한 경우는 10%</u>
· “비사업용토지”와 “법정주식 A와 법정주식 B 중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의 세율을 별도로 정함*	
· 파생상품에 대한 탄력세율 : <u>10%</u>	· 파생상품에 대한 탄력세율 : <u>5%</u>

* 적용 세율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
1억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 형평성 제고 및 도입초기의 파생상품에 대한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단, 중소기업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부칙 제12조에 경과조치 있음)

(6)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통한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 적용배제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명확화(소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종 전	개 정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중 -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1세대1주택이라도 <u>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포함한다</u>)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개정이유>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7)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가업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규정(소령 제163조의2제3항)

$$\text{가업상속공제율} = \frac{\text{가업상속공제금액*}}{\text{가업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규정 신설)

(8)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를 폐지함(소법 제112조의2 삭제)

(9)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외화차입금 환차익을 제외

종 전	개 정
·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범위 (단서 신설)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이유>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

11. 외부세무조정 규정과 대상을 법과 시행령에 규정

·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에 규정한 후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 2에 규정함

-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변호사

12. <참고>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개괄

구 분	내 용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함(^{소법} 12 (5)) → 이 경우 받은 금액의 20%부터 80%를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며(^{소령} 87 (3)), 원천징수 방법을 별도로 정함(^{소령} 202 ④) • 단,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소법} 21 ③) •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소령} 42의 2 ④ (1))
비 과 세	종교인소득 중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소법} 21 ① (26))
원 천 징 수 여부의 선택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이 원칙임(^{소법} 145의 3, ^{소령} 202의 4) • 단,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받는 자는 확정신고하여야 함(^{소법} 155의 6)
질문·조사 방 법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소법} 179)